문화복지위원회

수 신 : 의 장 2026. 10. 13.

제 목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

제322회 임시회 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의안번호	의 안 명	처리일자	심사결과
제14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10. 13.	**수정가결**

붙임 예비심사보고서 1부. 끝.

문화복지위원장

담당 전문위원 위원장

우) 12232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http://www.nyjcitycouncil.net
전화 031)590-2516 / 전송 031)590-2529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안번호
14

2026. 10. 1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상정) 2026. 10. 12.~13. / (의결) 2026. 10. 13.

2. 예산안 규모

가. 회계별 예산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26년도 제2회 추경	2026년도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률(%)
총 계	**2,864,302,555**	**2,585,667,539**	**278,635,016**	**10.78%**
일반회계	2,479,477,809	2,263,196,032	216,281,777	9.56%
특별회계	384,824,746	322,471,507	62,353,239	19.34%
공기업특별회계	240,998,952	206,852,247	34,146,705	16.51%
기타특별회계	143,825,794	115,619,260	28,206,534	24.40%

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2,479,477,809**	**2,263,196,032**	**216,281,777**
100	지방세수입	532,200,000	470,700,000	61,500,000
200	세외수입	162,843,290	147,109,919	15,733,371
300	지방교부세 등	293,419,000	298,200,000	△4,781,000
400	조정교부금 등	190,414,000	195,369,000	△4,955,000
500	보조금	1,113,247,631	1,027,632,030	85,615,601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7,353,888	124,185,083	63,168,805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가. 문화복지위원회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 문화복지위원회 국소별 총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총계	1,694,079,663	1,555,627,637	138,452,026	8.90%
복지국	1,222,368,451	1,099,689,885	122,678,566	11.16%
문화교육국	155,335,943	148,268,994	7,066,949	4.77%
환경국	228,206,893	223,423,984	4,782,909	2.14%
남양주보건소	29,586,518	28,208,358	1,378,160	4.89%
남양주풍양보건소	14,520,208	14,520,520	△312	
동부보건소	10,544,253	10,485,451	58,802	0.56%
농업기술센터	33,517,397	31,030,445	2,486,952	8.01%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805억 7,291만 원**에서 9.19% 증가한 **1조 6,165억 8,259만 9천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5.20%에 해당함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616,582,599	1,480,572,910	136,009,689	9.19%
복지국	1,211,441,917	1,089,848,527	121,593,390	11.16%
문화교육국	155,335,943	148,268,994	7,066,949	4.77%
환경국	161,636,363	158,210,615	3,425,748	2.17%
남양주보건소	29,586,518	28,208,358	1,378,160	4.89%
남양주풍양보건소	14,520,208	14,520,520	△312	△0.00%
동부보건소	10,544,253	10,485,451	58,802	0.56%
농업기술센터	33,517,397	31,030,445	2,486,952	8.01%

다. 문화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

- **복지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8억 4,852만 7천 원 보다 11.16% 증가한 1조 2,114억 4,191만 7천 원이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680억 1,440만 원, 기초연금 99억 9,568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8억 5,164만 4천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1억 7,384만 4천 원,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대행사업비 6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82억 6,899만 4천 원 보다 4.77% 증가한 1,553억 3,594만 3천 원 이며,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4억 9,633만 원,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5억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환경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82억 1,061만 5천 원 보다 2.17% 증가한 1,616억 3,636만 3천 원 이며, 소하천정비사업(직동천) 1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장내천) 1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4,995만 원,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835만 8천 원 보다 4.89% 증가한 295억 8,651만 8천 원 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9,858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2,052만 원 보다 0.002% 감액된 145억 2,020만 8천 원 이며, 지역 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8,545만 1천 원 보다 0.56% 증가한 105억 4,425만 3천 원 이며, 지역 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2,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10억 3,044만 5천 원 보다 8.01% 증가한 335억 1,739만 7천 원 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4억 630만 8천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0억 6,5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50억 5,472만 7천 원**에서 3.25% 증가한 **774억 9,706만 4천 원**으로 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53.88%에 해당함.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총계	**77,497,064**	**75,054,727**	**2,442,337**	**3.25%**
복지국	**10,926,534**	**9,841,358**	**1,085,176**	**11.03%**
의료급여사업 (복지정책과)	10,926,534	9,841,358	1,085,176	11.03%
환경국	**66,570,530**	**65,213,369**	**1,357,161**	**2.08%**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기후에너지과)	201,010	191,185	9,825	5.14%
수질개선 (환경정책과)	30,405,691	29,058,355	1,347,336	4.64%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과)	35,963,829	35,963,829	0	

마. 검토 의견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보고 요지

○ 문화교육국 예산안

(단위: 천원)

소관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체육과		25,000	25,000	-	
(p220/386)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25,000	25,000	-	

■ 관련 민간위탁사무 사업의 동의가 포함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